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3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9.

주 문

1.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등록세 19,363,660원의 부과처분 중 4,105,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등록세 19,36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업용 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7.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이 정한 창업중소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0. 7. 7. A로부터 [redacted]군 B, C, D 3필지 1,735㎡ 및 그 지상 건물 953.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부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취득에 관하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방향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2010. 7. 7.~2012. 7. 6., 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 5. 14.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종전에 면제했던 취득세 9,324,010원(농어촌특별세 847,630원 포함), 등록세 10,039,650원(지방교육세 1,563,270원 포함) 합계 19,363,6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1) ① 에이동 창고 259.6㎡ 및 위험물저장소 200.02㎡, ② 비동 창고 493.6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쟁점 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수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도 납부한 점, 관계법령에서는 감면 요건으로 취득 부동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업 공장'이 아닌 '창고 및 위험물저장소'라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방향제 제조업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방향제 제조업을 했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주식회사 [redacted]에[redacted](이하 '[redacted]에[redacted]'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부분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A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점, 원고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인 [redacted]구청에 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청인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은 쟁점 기간에 다른 회사의 유독물판매업 사업장으로 신고된 점,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창고 및 위험물저장소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사업장으로 하는 공장 등록, 설립승인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는 약품제조 등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이 전혀 없었고 텅 비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redacted]에[redacted]에게 임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및 증명책임

조특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 등기·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때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했다는 점은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560 판결 참조).

2) 임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A와 [redacted]에[redacted] 사이에 2009. 12. 26. 이 사건 건물 중 202㎡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명도일 2009. 12. 31., 임대차기간 명도일로부터 4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A로부터 2010. 7.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서울에스엠에 위 202㎡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위 202㎡ 부분 및 그 부지는 원고가 감면대상 사업인 방향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피고가 위 임대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 임대인인 A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특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각 단서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각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29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임대부분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미 임대되어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당초 위 임대부분에 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거나, 설령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임대부분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4,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14. 대구 서구 E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원고의 사업장이 위 주소지로 기재된 사실,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A동)' 및 '창고시설(B동)'로 기재된 사실, [redacted]에[redacted]은 2010년, 2011년, 2012년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자 실적현황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7, 18,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0년 제2기 18,628,000원, 2011년 제1기 33,032,500원, 2011년 제2기 31,754,500원, 2012년 제1기 57,396,500원, 2012년 제2기 8,591,000원의 매출액을 신고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방향제 제조·판매업 매출에 해당하는 점(피고는 원고와 매출처인 F, [redacted]에[redacted]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2010. 7. 8. G으로부터 [redacted]구 E 지상 3층 23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5만 원에 임차하고 이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무실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위 장소에서 방향제 제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건물 외에 원고가 방향제 제조를 한 사업장이 별도로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건축물대장상 제조업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제조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유독물 취급업체인 [redacted]에 [redacted]에 임대하였으므로, [redacted]에 [redacted]이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유독물영업자 실적현황을 보고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기간에 이 사건 건물 중 임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방향제 제조업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redacted]에 [redacted]에게 임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정당세액 목록의 '합계세액-임대부분'란 기재와 같이 4,105,096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별지 1]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별지 2]

정당세액

(금액단위 : 원)

구분	토지 면적 (㎡)	건물 면적 (㎡)	시가표준액 합계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취득 과세표준액	취득세	등록세	합계 세액	안분율
전체	1735.00	953.3	415,076,680	141,275,700	273,800,980	330,000,000	9,324,010	10,039,650	19,363,660	1
임대 부분	367.82	202.0	87,996,256	29,950,448	58,045,808	69,960,000	1,976,690	2,128,406	4,105,096	0.212
그외 부분	1367.18	751.3	327,080,424	111,325,252	215,755,172	260,040,000	7,347,320	7,911,244	15,258,564	0.788

<끝>